

대전지방법원 2024. 3. 20 선고 2023가단71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섭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석

변 론 종 결 2024. 2. 28.

판 결 선 고 2024. 3.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2,480,000원과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2. 3.부터, 그 중 15,480,000원에 대하여는 2021. 4. 1.부터, 그 중 19,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4. 20.부터,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4.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21. 2. 3. 1,000,000원, 2021. 4. 1. 15,480,000원, 2021. 4. 20.

19,000,000원, 2021. 4. 28. 7,000,000원 합계 42,48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23. 1.경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를 사기 및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고소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23. 2. 27. ‘피고가 2023. 2. 27. 현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44,000,000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위 금액을 44회로 나누어 균등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23년 제561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23. 3. 10. 피고와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368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4. 1. 3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같은 법원 2024나2025246호로 항소심(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이 진행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중복제소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인 이 사건 관련

소송과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인 이 사건 소가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할 의사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42,480,000원을 편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할 의사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42,480,000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 할지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23. 2. 27. ‘피고가 2023. 2. 27. 현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44,000,000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위 금액을 44회로 나누어 균등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의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의 손해배상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